
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20796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26.
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)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의 대상 사업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2(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)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의 대상 사업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9조의2 (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)	기업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9조의2 (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)	제3호 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○ 안 제19조의2는 기업부설연구소등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의 연구개발인력 육성·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,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- 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이라 아니라,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·선언적 규정임 ○ 현재 지원 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아직 설립 전 단계이므로, 해당 비영리법인의 구체적인 규모나 사업 운영 계획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- 특히 비영리법인에서 수행할 사업 중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으로, 법인 설립 후 운영계획 등이 수립된 후에 지원사업 선별 등을 통해 기술적인 비용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--

Ⅲ. 부대의견

○ 해당없음

Ⅳ. 작성자

○ 성명

주무관	사무관	과장	실장
김소정	류효진	김보현	김성수

○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류효진	044-202-4732	issue511@korea.kr